

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				30일	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		
	설치등 구분	[] 신축 [] 증축 [] 개축 [] 재축 [] 이전 [] 대수선 [] 용도변경				
	건축물 명칭				준공일	
	건축주	성 명			연 락 처	
		주 소				
	대지 현황	대지 지번			대지면적 m ²	
	건축물 현황	면적 연면적 m ² , 건축면적 m ²			용 도	
		층수 지상 층, 지하 층			수용인원 명	
		지하역사 명칭				
		지하도상가 명칭				
신 청 일		0000. 00. 00.				
신청 사유					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서류 2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,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			수수료 없 음		
처 리 절 차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 시·도	→	심의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	→	통보 시·도